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0가합59802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재민

피 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국원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엄기은

변 론 종 결 2022. 6. 7.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7,137.24/45,238.9 지분,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각 38/100 지분 및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763,922,416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763,922,4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접착제 및 수지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D 공장에서의 화재 발생

2019. 8. 30.경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공장에서 화재 및 폭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이 발생하여, D와 피고의 공장이 전소·파손되었고, 화재가 확산됨에 따라 주 식회사 E의 공장, 내부 기계장치를 비롯한 인근의 공장건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사고현장 중심 500m내 위치한 판넬조 공장건물들이 모두 파손되었다).

다. D와 피고 사이 매매계약 체결 등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가 28,101.66/45,238.9 지분을, D가 17,137.24/45,238.9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같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제2항 기재 건물을 'F동', 제3항 기재 건물을 'G동'이라 한다)은 피고가 62/100 지분, D가 38/100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같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H동'이라 한다)은 D가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9. 11. 20.경 D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D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787,000,000원(토지 2,433,000,000원, F동 353,999,998원, 이미 전소된 G동 및 H동은 매매금액 산정에서 제외하되, 부동산거래신고 절차상 G동 및 H동을 각 1원으로 책정)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500,000,000원은 매수인인 피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에서 피고가 인수한 위 근저당권 대출금채무 2,50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87,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다음 날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E는 공장 및 공장 내 기계장치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은 사실[주식회사의 손해사정 보고서(갑 제12호증)에 따르면 그 추정 손해액은 2,926,420,101원에 이른다], 총주소방서의 화재발생종합보고서(갑 제14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H동 내 반응기에서 유증기가 새어나오면서 최초 폭발이 발생하였고, 그 폭발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11. 29.경 주식회사 E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1,763,922,416원을 지급(1차로 900,000,000원, 2차로 863,922,416원을 지급)한 사실은 갑 제9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주식회사 E에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에 따라 피고 E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E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이 사건 사고일인 2019. 8. 30.경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D의 무자력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6 내지 19호증, 을 제6,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중소기업은행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D의 2018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갑 제16호증) 상 2018. 12. 31. 기준 D의 총 자산은 15,852,318,998원, 총 부채는 3,583,733,729원, 총 자본(=자산 - 부채)은 11,358,858,701원이고, 자산 중 “유형자산” 항목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 지분(토지: 2,551,848,046원, 건물 1,788,809,776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② D의 2019년 외부 회계감사보고서(갑 제17호증)에는 “ 2019년 8월 30.일에 발생한 화재에 기인하여, 우리는 회사로부터 경영자가 서명한 경영자확인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및 주석을 포함한 재무제표와 관련된 회계기록 및 증빙자료를 제시받지 못하여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 H동은 전소되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F동(공장, 사무소, 기숙사로 구성되어 있다) 중 사무소는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어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며, F동 중 공장은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되어 철거 예정인 상태였던 사실, ④ 관련사건(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가합6320)에서 진행된 감정결과(갑 제19호증의 5)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2019. 11. 20. 기준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2,810,507,36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19. 11. 8.경 이루어진 감정평가(을 제6호증)에 의하면, F동 기숙사 중 D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263,027,000원(= 174,782,000원 + 88,245,000원)인 사실, ⑤ D는 J 주식회사와 보증기간을 2018. 4. 24.부터 2019. 4. 24., 보험금액을 3,558,000,000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체결한 사실, 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E는 2,926,420,101원 상당의 손해를, 피고는 6,16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각 입은 것으로 추정되며, 그 외 인근 공장을 소유한 업체들도 공장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사실, ⑦ D는 2019. 10. 8.경 K은행으로부터 25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D는 여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손해배상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의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다. 사해의사 및 사해행위

1) 관련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호증, 을 제1, 2, 7, 8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관련사건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일인 2019. 11. 20. 기준 이 사건 토지 중 D 지분의 가치는 2,810,507,360원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인 2019. 11. 8.경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의하면 F동 기숙사 중 D 지분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은 263,027,000원이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G, H동은 전소되었고, F동 중 사무소는 이미 철거된 상태였으며, 공장은 철거예정인 상태였다(이후 피고는 공장을 철거한 다음 사무소와 공장을 다시 신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계약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은 총 3,073,534,360원(= 2,810,507,360원 + 263,027,000원)으로 볼 수 있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은 2,787,000,000원으로 위 감정평가금액의 합계액인 3,073,534,360원보다 다소 낮다. 그러나 D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만을 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이는 채권자들 중 일부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더라도 마찬가지인바 그 낙찰가가 위 객관적 가액에 미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30억 원의 중소기업은행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바, D는 이로 인하여 대출금 원금을 반환할 의무는 물론, 약 연 2.8%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까지 면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상당한 가격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 등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D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매매대금 287,000,000원¹⁾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였다.²⁾ 라) 피고는 계속적인 사업의 영위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을 매수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나 이 사건 매매계약 대금의 액수, 사용처 등 제반 사정까지 고려하면, D가 피고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거나 피고에게 원고 등 D의 일반채권자를 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기선, 판사 현재언, 판사 최윤영

[별지]

1. 충청북도 충주시 M 공장용지 45238.9㎡

2. 충청북도 충주시 M F동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3층 공장

1층 공장 (위험물취급소)

2,040㎡

2층 공장 (위험물취급소)

706㎡

3층 공장 (위험물취급소)

479.94㎡

부속건물

1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사무소

1,027.94㎡

2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사무소

923.13㎡

1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기숙사

405㎡

2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기숙사

334.8㎡

3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기숙사

348.84㎡

1층 일반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창고 500㎡

1층 일반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위험물저장소 164㎡

1층 일반철골조

기타지붕(판넬) 창고 492㎡

1층 철근콘크리트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경비실

18㎡

3. 충청북도 충주시 M G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 공장

1층 1,767.02㎡

2층 990㎡

2층 605㎡

4. 충청북도 충주시 M H동호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판넬) 2층 공장

1층 665㎡

1층 60.2㎡

2층 329㎡

2층 234㎡

부속건물

일반철골조 보일러실 80㎡, 끝.

-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담보채무원리금은 2,502,514,965원(= 원금 25억 원 + 2019. 11. 8.부터 2019. 11. 20.까지 13일간 발생한 이자 2,514,965원)이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피담보채무의 원금 25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287,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 2) 2019. 12. 2.경 215,962,923원을 어음결제에, 2019. 12. 10.경 66,662,500원을 (주)L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